

18. 보증채무금 청구

☐ 보증채무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81,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피보증인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를 취득하여 본보증 우선 해지할 것'을 보증조건으로 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증조건에 따른 은행의 의무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은행과의 사이에서 '은행은 피보증인인 의료재단의 사업장 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하고, 병원건물을 준공한 즉시 건물에 대하여 주담보를 취득하여 본보증을 우선 해지할 것'이라는 보증조건과 은행이 그 보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면책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이 위 보증조건에 따라 의료재단의 병원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 전부를 위한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 대한 공인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은행의 대출규정에 따른 담보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였다면, 은행의 합리적인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게 과대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그 담보물로는 은행의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고, 가사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에 의하여 대출원리금 전액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은행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구상권에 대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게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619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효력(무효)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9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2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반드시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여야만 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무효라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186,874,307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그 해 3. 3.까지는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71,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해 4. 15.부터, 17,6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달 23.부터, 14,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해 5. 3.부터, 1,704,307원에 대하여는 그 달 16.부터, 32,57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달 21.부터, 1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달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요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00,000,000원 및 그중 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나머지 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금전 대여 당시 대주가 받은 소개비가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자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가 이를 대여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예비적 병합)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주위적으로 보증채무금, 예비적으로 계약채결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 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은행이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대상 기업에게 연체대출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하여 행한 신용보증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7.26. 선고 94다 25964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1. 원고에게, 피고 조○일, 송○일은 각 3,443,653원, 피고 송○이, 송○삼은 각 2,295,768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의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2.부터 같은해 12. 14.까지는 별지 이율변동표 기재의 정상이율에 따른,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그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약관의 취지 및 은행의 위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신용보증약관상 그 특약 위반시 "담보취득 당시 은행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한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편, 은행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만약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에 있고, 은행이 부담하는 담보취득의무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라도 은행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49609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2011. 11. 8.까지 연 19%, 2011. 11. 9부터 2011. 12. 28.까지 연 18%, 2011. 12. 29.부터 2012. 1. 13.까지 연 19%, 2012. 1. 14.부터 2012. 3. 28.까지 연 15%, 2012. 3. 29.부터 2012. 6. 27.까지 연 19%, 2012. 6. 28.부터 2014. 1. 22.까지 연 18%,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액에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지급보증서에서 보증금액을 정하여 둔 것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및 보증채무를 신의칙에 기하여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의 순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보증 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신의칙상 보증책임을 일정한 비율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제한된 비율에 상응한 정당한 보증채무액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청구 당시의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하여 먼저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그중 정당한 채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전체 보증채무액에 대한 이행청구 이후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지연손해금까지를 먼저 합산하고 이에 보증한도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로소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1433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금액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90,740원 및 그중 193,217,078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연 16%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54,573,662원에 대하여는 2015. 12. 5.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4.2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신용보증약관의 취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언제나 보험자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보험자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 보증채무금 청구(피고별로 균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21,631,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수출신용보증채무이행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64,207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위 지급확인서도 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신용장 소정의 필요서류(Documents Required)란이 아닌 추가조건(Additional Conditions)란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가 제시되어야 할 서류로 기재된 경우, 신용장의 문면상 지급확인서에 관하여 원본이 제시되도록 되어 있고, 그 명칭, 발행자 및 신용장 불일치사항을 치유하는 기능 등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추가조건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를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개정된 것) 제13조 c항에서 말하는 '서류에 대한 언급없이 기술된 조건'으로 보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급확인서는 신용장대금 청구시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②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취소불능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신용장에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그 수권자들이 발급한 지급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 대금 지급 여부가 개설의뢰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확인서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제시되는 경우에 그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신용장이 '취소불능'에서 '취소가능'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용장의 취소불능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수 없다.(서울고법 1999. 4. 30. 선고 98나36742 판결)

☐ 신용보증채무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28,275,448원 및 위 돈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8.부터 2006. 3. 24.까지는 연 7%, 699,956,370원에 대하여는 2006. 3. 25.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3.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6. 30.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5.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8.부터, 2,984,078원에 대하여는 2007. 3. 2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3.부터 각 2007. 4. 14.까지 연 7%, 2007. 4.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9.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11.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4.부터, 1,206,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각 2008. 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그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약관의 취지 및 은행의 위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신용보증약관상 그 특약 위반시 “담보취득 당시 은행 내규에 의한 당해 시설의 담보평가액에 담보물건별 융자최고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보증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설자금으로 설치한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한편, 은행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취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만약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는 데에 있고, 은행이 부담하는 담보취득의무는 당해 시설이 준공된 상태에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라도 은행이 당해 시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이상,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그 담보가치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49609 판결, 공1999하, 2180)